

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남궁역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6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남궁역, 강석주, 고광민,  
곽향기, 김영철, 김원태,  
김재진, 김종길, 김태수,  
남창진, 박 석, 박중화,  
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 
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  
이봉준, 이성배, 이영실,  
이은림, 이종태, 이종환,  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28명)

### 1. 제안이유

- 도시공원 등에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의 조성이 증가하고 있음.
-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보행로 오염, 강우시 미끄러움, 이물질에 의한 상해, 강우시 및 동절기 유지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맨발 걷기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, 이용객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신설함.(안 제4조제2항3항)
- 나. 지원사업시 맨발 보행로의 유지 보수,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 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5조제3호,제4호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이용객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.

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,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·보수

4.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지원계획의 (생략)	수립·시행)	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	①	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설>		②	<u>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.</u>	
<신설>		③	<u>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이용객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.</u>	
제5조(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)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	제5조(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)	----- ----- -----.	
1.·2. (생략)		1.·2.	(현행과 같음)	
<신설>		3.	<u>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,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·보수</u>	
<신설>		4.	<u>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</u>	
3.·4. (생략)		5.·6.	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	

#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)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5조	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(붙임1)	43,630,330

※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  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병준  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중헌  
추계분석관      김지혜  
☎ 02-2180-7952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## [붙임 1] 2024년 서울시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설명서

### □ 사업목적

- 자치구 위임 시공원의 노후·훼손된 시설물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
- 산책로 및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 및 수목을 식재하여
-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

### 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 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(비용부담)
  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(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)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 - 시공원 보수정비사업 추진계획
  -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계획

### □ 사업내용

- 규 모 : 81개 공원(자치구 중복 21개소) , 공원면적 87.6 $km^2$
- 주요내용 : 자치구 위임 시공원 시설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